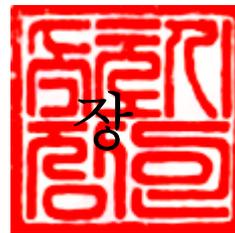


속초시 대포항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·완화 특정구역지정 고시(안) 주민 공고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,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·완화 특정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3월 16일

속 초 시



1. 공고내용 : 속초시 대포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·완화 특정구역 지정 고시(안)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(2012. 3. 16 ~ 4. 5)
3. 의견제출 :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(☎ 033-639-2445)

※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